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422호

나.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 외 41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01월 05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02월 06일

### 2. 제안이유

-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지연과 임원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의 방지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기관 중 2개 기관이 추천을 완료한 경우 나머지 기관도 1개월 이내에 추천하기 위해 발의됨.

##### 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제8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이사·감사)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법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침(「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이하 ‘출자출연지침’)에서는 임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 후 추천토록 하고 있음.
- 출자출연지침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해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를 총 7명으로 하고, 단체장 추천 2명, 해당 출자·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

##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항 >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는 공사·공단<sup>1)</sup>에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구성함.
-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정관으로 정함(영 제56조의3)

### ▪ 구성시기

- 지방공사·공단은 소속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 구성
- 그 밖의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성

### ▪ 구성인원

-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3인,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 추천 3인

### ▪ 존속기한

-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8항)

### ▪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무

- 관계 법령 및 지방공사·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 사장(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이사장)에게 추천

○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는 개별조례와 법률<sup>1)</sup>에 따라 3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됨.

○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 등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지체없이 용어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sup>2)</sup>으로 위원의 추천이 지연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1)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관장, 이사, 감사 임기는 3년으로 동일하고, 사회서비스원 기관장 임기는 3년이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임.

2)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이 없고, 지체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며, 지체없이의 준수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됨.

- 최근 TBS(교통방송)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2022.11.10.)한 이후, 서울시(2명)와 시의회(3명)의 위원 추천은 완료됐으나, TBS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천 인사를 미루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바 있음.
-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⑤ (생략)  <u>&lt;신설&gt;</u>  ⑥·⑦ (생략)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u>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 이는 위원 추천의 지연 방지와 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으로 기관 임원의 공백과 경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목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위원의 추천기한이 다른 2개 기관의 추천이 완료한 날이라는 유동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에서 각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시기를 기점으로 특정 기한(1개월 이전 등) 내에 추천토록 강제하고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수정해 추천기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